

석사학위논문

부가가치세 정착을 위한
제도와 행정의 개선방안 및 사회적 인프라구축방안



제주대학교 경영대학원

회계학과 회계학전공

최희경

2005년 2월

석사학위논문

부가가치세 정착을 위한
제도와 행정의 개선방안 및 사회적 인프라구축방안

지도교수 이 경 주



제주대학교 경영대학원

회계학과 회계학전공

최 희 경

2005년 2월

부가가치세 정착을 위한
제도와 행정의 개선방안 및 사회적 인프라
구축방안

지도교수 이 경 주

최 희 경

이 논문을 경영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4년 12월

최희경의 경영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제주대학교 대학원

2005년 2월

- 목 차 -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방법과 구성	2
제2장 부가가치세의 이론적 고찰	4
제1절. 부가가치세의 개념	4
제2절. 부가가치세의 과세유형	4
제3절. 부가가치세의 과세방법	6
제4절. 부가가치세의 경제적효과	8
제3장.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의 현황 및 문제점	13
제1절. 간이과세제도	13
제2절. 세금계산서제도	17
제3절. 신용카드제도	22
제4절. 성실납세자 및 불성실사업자에 대한정책	27
제5절. 납세환경과 납세자의식	37
제4장. 부가가치세 정착을 위한 제도와 행정의 개선방안 ...	42
제1절. 간이과세제도	42
1. 간이과세제도 폐지	42
2. 현행 간이과세제도하에서의 개선	44
제2절. 세금계산서제도	45
1. 세금계산서 수취를 유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보완	46
2. 필수적 기재사항에 대한 개선	46
3. 사업자등록 교부조사 철저 및 사후관리강화	47
4. 세금계산서 추적조사의 지속적 실시	48
5. 부실세금계산서 수수자에 대한 제재강화	49

제3절. 신용카드제도	50
1. 신용카드 사용확대를 위한 제도의 개선방안	50
2. 신용카드발행분 세금계산서 교부금지에 대한 개선방안	54
3. 현금영수증제도	55
제4절. 성실납세자 우대 및 불성실납세자에 대한 처벌강화	55
1. 성실납세자 우대	56
2. 불성실납세자에 대한 처벌강화	56
제5장 부가가치세 정착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구축 방안	59
제1절. 조세교육 및 홍보의 확대	59
제2절. 국세청 마일리지제도(가칭) 도입	62
제6장. 결 론	64
참 고 문 헌	69



- 표 목 차 -

<표3-1> 과세유형별 부가가치세 신고인원 변동추이	14
<표3-2> 과세유형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변동추이	14
<표3-3> 과세유형별 납부세액 변동추이	15
<표3-4>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급별 현황	15
<표3-5> 연도별 부가가치세 경정조사 실적	29
<표4-1> 2000.1기 가맹점 1인당 과세표준 증가율 비교	51
<표6-1> 요약표	67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우리나라가 1977년 7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제를 도입 시행한지 벌써 27년이 지났다. 그간 부가가치세는 재정수입의 안정적 확보에 크게 기여하여 2002년 부가가치세수입은 약31조원으로 총국세수입의 32.7%, 내국세수입의 38.4%를 차지하고 있어 국세의 다른 어느 세목보다도 과세대상 범위가 넓고 납세인원도 많으며 국민 대다수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세목으로서 자리를 잡았다.

또한, 부가가치세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및 법인의 각종 과세에 관한 기초자료로서 사업자가 사업중에 발생시킨 매출액이 다른 조세 부담액을 결정하는 기준되어 부가가치세의 성실신고 여부에 따라 소득세·법인세 기타 조세의 정확한 부담액이 결정된다는 측면에서 부가가치세는 선행세목으로서 중요도가 높다 하겠다.

그러나 이렇게 세수 비중이 높고 선행세목으로서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반면 부가가치세가 국민의식속에 소비세로서 제대로 정착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아직까지도 부가가치세는 일반소비세로서 소비자가 담세자이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사업자도 사업관련 비용으로서 인식하고 있으며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도입된 간이과세제도는 세금계산서 수수질서를 문란시키고 각종 탈세의 온상으로 부가가치세가 제대로 정착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게 현실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세수의 안정적 확보에 전념하였을 뿐 부가가치세정착을 위한 납세의식을 높이고 납세환경을 개선하

는데는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제 정부는 간이과세대상금액 조정이나 각종 세액공제등의 일시방편적인 대처를 지양하고 부가가치세를 올바르게 정착할 수있도록 각종 제도와 행정을 개선하고 부가가치세에 대한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납세환경을 개선하는데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부가가치세의 올바른 정착은 곧 타세목의 성실신고의 발판이 될 것이며 즉, 선진세정으로 나아가는데 가장 큰 버팀목이 되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논문은 현행 부가가치세제의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부가가치세 정착을 위한 제도와 행정의 개선방안 및 사회제도적 인프라 구축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선진세정으로 진일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절. 연구의 방법과 구성



본 연구의 방법으로는 기본적으로 문헌적 기술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즉 부가가치세제와 관련한 참고서적, 국세청등 행정기관의 통계자료, 한국조세연구원등의 연구기관의 문헌과 연구논문 및 기타 부가가치세제에 관한 각종 선행 학위논문을 수집하여 이론적 분석을 통하여 본 연구의 이론적 기초로 삼고 현실적 제도의 운영실태분석을 위해서는 가급적 국세행정의 통계자료를 활용하였다.

부가가치세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본 연구논문은 제6장으로 구성되었으며 각장의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서론으로 연구목적을 제시하였고, 이에 대한 연구방법과 범위를 언급하였다.

제2장에서는 부가가치세의 기본이론에 대하여 정리하였고,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의 실태 및 문제점으로써 간이과세제도, 세금계산서수수질서 문란, 신용카드 변칙거래 및 거래기피현상 및 조세회피성향의 납세의식등을 분석해보았으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서 제4장에서는 제도와 행정의 측면에서 간이과세제도 및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제도의 개선방안을, 제5장에서는 사회적 인프라 구축방안으로서 납세의식개선을 위한 납세홍보·교육의 강화, 성실납세자우대·불성실납세자에 대한 처벌강화 및 성실신고·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마일리지부여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6장에서는 본 연구에 대한 요약 및 결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장. 부가가치세의 이론적 고찰

제1절. 부가가치세의 개념

부가가치세란 재화 또는 용역이 생산·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이에 참여한 각 기업이 추가창출한 가치인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를 말한다. 다시말해서 어떠한 재화이든 완성재로서 소비자에게 판매되려면 원료의 생산에서부터 원료의 가공,제품의 생산, 제품의 도·소매 등 생산 및 유통의 여러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생산 및 유통의 각 단계마다 참여한 각 기업은 전단계에서 생산된 재화 또는 용역을 외부로부터 구입·사용하고, 여기에 토지·노동·자본·경영등을 가하여 기업활동을 전개한 결과 새로운 생산물을 생산하게 된다. 이때 새로운 생산물가치에서 구입·사용한 전단계의 생산물 가치를 차감한 부분이 자기단계에서의 가치증식분인 부가가치이고, 이는 곧 새로운 생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가하여진 생산요소가치, 즉 당해 기업에서 발생한 지대·임금·이자 및 이윤등의 합계이기도 한데, 부가가치세란 이러한 부가가치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조세를 말한다.

제2절. 부가가치세의 과세유형

부가가치세는 그 범위에 따라 국민총생산형, 소득형 및 소비형의 세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¹⁾

1. 국민총생산형(GNP type) 부가가치세

국민총생산형 부가가치세는 모든 소비재와 자본재, 즉 총투자비용(감가상각비 포함)을 과세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부가가치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총매출액에서 중간재 구입액(원재료,반제품 등)의 공제는 허용하나 자본재의 매입비용이나 감가상각비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의 경제적 과세표준은 각 단계에서의 임금·이자·이윤·지대·감가상각비의 합계액인 국민총생산액과 일치한다.

부가가치세 유형중 과세범위가 가장 광범위하여 동일한 세율하에서는 최대의 세수를 올릴 수 있는 반면, 자본재에 대하여 과세함으로 인하여 투자를 억제할 뿐만 아니라 자본재는 매입시에 과세되고, 또한 그것으로 산출한 생산물이 소비자에게 판매될 때 생산가격에 포함되어 중복과세되는 단점이 있다.

$$\text{부가가치} = \text{총매출액} - \text{중간재구입액} = \text{임금} + \text{이자} + \text{이윤} + \text{지대} + \text{감가상각비}$$

2. 소득형(NNP type) 부가가치세

소득형 부가가치세는 총투자액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순투자액을 과세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총매출액에서 중간재 구입액 및 자본재의 감가상각비가 공제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의 경제적 과세표준은 임금·이자·이윤·지대의 합계액인 국민순생산액과 일치한다.

1) 한장석·김용관, 「부가가치세 2004」, (주)광고TNS, 2004, PP.69~71.

부가가치계산시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는 점에서 국민총생산형보다 합리적이라 할 수있으나 마찬가지로 투자액도 부가가치세에 포함되므로 투자가 억제되며, 또한 부가가치에서 제거되는 감가상각비의 적정계산이 곤란한 점이 있다.

$$\text{부가가치} = \text{총매출액} - \text{중간재구입액} - \text{감가상각비} = \text{임금} + \text{이자} + \text{이윤} + \text{지대}$$

3. 소비형(Consumption type) 부가가치세

소비형 부가가치세는 소비만을 과세대상으로 하므로 소비재 생산과정의 각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세가 과세대상이 된다.

따라서 소비형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기업의 총매출액에서 원재료 및 중간재 구입액과 설비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을 공제한 금액이다.

소비형은 자본재에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비용을 저하시켜 투자를 촉진하고, 중간재·자본재등의 구분이 필요없으며 감가상각비계산이 따로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세제의 운영이 간편하다.

이 세가지 유형중 소비형은 투자촉진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다른 유형보다 우월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소비형 부가가치세를 채택하고 있다.

$$\text{부가가치} = \text{총매출액} - \text{중간재구입액} - \text{자본재구입액} = \text{국민소득} - \text{투자지출액}$$

제3절. 부가가치세 과세방법

부가가치세의 과세방법에는 다음과 같이 가산법, 전단계 거래액공제법,

전단계 세액공제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2)

1. 가산법

가산법은 일정기간중에 발생한 각 기업의 부가가치 구성요소인 지대·임금·이자·이윤 등을 합계하고 이 합계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여기에 세율을 적용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가산법에 의한 부가가치세액은 일정기간의 종료 후가 아닌 거래의 단계별 세액을 정확히 측정할 수 없는 단점이 있고, 생산요소등을 합산하기 때문에 소비세가 아닌 법인세와 비슷한 기업과세 성격을 띤다.

$$\text{부가가치세} = \text{부가가치 합계액 (임금 + 이자 + 이윤 + 지대)} \times \text{세율}$$

2. 전단계거래액 공제법

전단계거래액공제법은 일정기간 중 각 기업의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공제한 금액을 당해 기업의 부가가치로 보아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여기에 세율을 적용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품목별 복수세율이나 면세제도를 두는 경우에 어려운 점이 많고 세부담의 전가도 불확실하므로 소비세로서의 부가가치세에는 불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text{부가가치} = (\text{매출액} - \text{매입액}) \times \text{세율}$$

2) 한 장석·김용관, 「부가가치세2004」, (주)광고TNS, 2004, PP.71~72.

3. 전단계세액공제법

전단계세액공제법은 일정기간중 각 기업의 매출액 전체에 대하여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매출세액)에서 매입시 거래 징수당한 세액(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이 방법을 적용하려면 매입시에 매입세액을 징수당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세금계산서제도가 필수요건이다.

$$\text{부가가치세} = \text{매출세액} (\text{매출액} \times \text{세율}) - \text{매입세액}$$

현행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 이 방법을 채택하고 있으며 유럽 각국등 부가가치세를 실시하는 거의 모든 나라들이 이 방법에 의하고 있다.

이 방법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으나 세액계산이 간편하고 수출등에 대하여 완전면세가 가능하며 세무담의전가가 명료하여 소비세로서의 성격이 뚜렷하고 세금계산서 수수에 의하여 거래자료가 양성화되는 장점이 있다.

제4절. 부가가치세제의 경제적 효과

정부는 부가가치세법 제정목적으로간접세제의 간소화·수출촉진·투자촉진 및 간접세의 중립성 유지등을 들었다.

부가가치세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각 나라의 사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가 있다.³⁾

3) 한장석·김용관, 「부가가치세2004」, (주)광고TNS, 2004, PP.73~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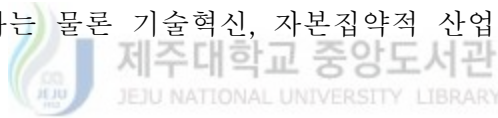
1. 긍정적 효과

1) 수출의 촉진 및 국제수지의 개선

수출에 대하여는 GATT의 소비지 과세원칙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됨으로서 수출물품에 부과되었던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수출사업을 영위하는데 소요되는 모든 경비에 대하여 부과된 부가가치세까지 환급받을 수 있어 완전면세가 가능하며, 수입재화에 대하여는 국내물품과 동일하게 과세됨으로서 수출촉진과 함께 상대적으로 수입억제의 효과가 있어 국제수지의 개선이 이루어지게 된다.

2) 투자유인

투자재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이 공제됨으로써 부가가치세가 부담되지 않으므로 투자촉진효과는 물론 기술혁신, 자본집약적 산업의 발전 등 경제성장에 기여하게 된다.



3) 조세의 중립성 유지로 자원배분의 합리화

종전의 물품세등 개별소비세는 과세대상이 선택적이고 세율의 차가 심하여 가격구조의 왜곡과 자원배분의 합리화를 저해하는 면이 있었으나 부가가치세는 중복과세되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동일한 세율로 과세되므로 국내자원이 시장가격에 의하여 배분되는 등 자원배분의 합리화를 기할 수 있다.

4) 세수확보 및 예측의 용이성

부가가치세는 과세대상이 포괄적인 반면, 각 거래단계별로 분할징수되고 조세의 전가도 여타 조세에 비하여 명확하므로 조세부담에 대한 심리적인 저항감을 완화시킬수 있으며, 저축·투자보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소비지

출에 대하여 과세되므로 세수확보가 용이하다. 또한 모든 거래가 세금계산서의 교부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세액의 자동검증이 가능하고 누락또는 포탈의 여지도 줄어들게 되어 근거과세를 구현할 수 있다.



5) 조세제도의 간소화

부가가치세의 도입전 세제가 매상세제인 경우는 세제간소화 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나, 우리나라의 구간접세 체계처럼 과세대상별로 특정세목을 가지고 독립적인 과세체계에 의해 운용되는 경우에는 이의 효과는 커진다.

2. 부정적 효과

1) 물가등귀의 촉진작용 문제

부가가치세 도입이 반드시 물가의 등귀요인이 된다고는 할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도입에 따른 종전가격과의 가격변화, 높은 조세전가도, 납세의무의 심리적 요인등에 의하여 도입초기에는 물가의 등귀요인이 다소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2) 조세부담의 역진성 문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단일세율로 적용되고, 세부담 전액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므로 소득에 대하여 부담이 역진적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초생활 필수품에 대한 면세와 고소득층이 사용하는 사치성 물품, 고가 내구성 소비재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이외에 특별소비세를 과세함으로써 세부담의 역진성문제를 완화하고 있다.

3) 경기조절기능의 미흡

소비형 부가가치세는 경기변동에 가장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는 투자재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세제의 자동적 안정조절기능을 약화시킨다. 그러므로 세제의 경기조절기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소비형 부가가치세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조세인 것이다.

4) 세무행정 및 기업회계업무상 비용의 증대

전단계세액공제를 채택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는 세금계산서의 수수를 기본 전제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세무당국 및 기업의 업무량 증대와 경비의 지출이 불가피하다.



제3장.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현황 및 문제점

제1절. 간이과세제도

1. 간이과세제도의 도입배경

간이과세제도는 부가가치세 도입당시 과세특례제도를 두어 영세사업자를 보호하고 단일세율의 충격을 완화하고 조세마찰을 줄여 세무행정 비용을 줄이고자 도입한 제도가 시간이 흐르면서 문제점을 보완하여 시행된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제는 소비형을 취하면서 세액의 산정은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전단계세액공제법은 세금계산서의 교부 및 수취를 그 존립의 전제로 하게 된다. 또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정기초를 이루는 장부를 비치·기장하여야 하는데 그 규모가 영세한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거래시기등과 같은 세법의 지식, 장부의 기장과 계산능력, 세금계산서의 교부 및 신고서의 작성능력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납세순응 능력을 고려하여 일반납세자와는 달리 여러 가지 의무 및 부담을 경감하게 된 것이다. 즉, 납세협력의무의 이행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자에게 납세협력의무의 수준을 완화함으로써 그들의 납세협력 비용을 경감시켜주고자 하는 것이었으며, 결코 조세부담자체를 완화해주기위한 제도로 구상된 것이 아니었다.

2. 간이과세제도의 실태 및 문제점

아래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간이과세자는 2002. 12. 31일 현재 184만명으로 총

사업자 396만명대비 46.52%를 차지하고 있으나 과세표준은 1.57%, 납부세액은 0.21%에 그치는 등 이른바 영세사업자로서의 특례를 적용받는 사업자가 전체 납세자의 절반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이러한 간이과세제도는 도입취지와는 달리 세부담경감제도로 변형되어 부가가치세의 근간을 헤치며 세금계산서의 수수질서를 교란시키고 각종 탈세의 온상으로서 부가가치세가 정착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표 3-1>과세유형별 부가가치세 신고인원 변동 추이

(단위 : 천명)

년도	계	법인	일반	간이	특례	특례점유비
1998	2,855	197	979	546	1,133	58.80
1999	2,999	232	1,059	587	1,121	56.95
2000	3,391	279	1,443	1,669		49.21
2001	3,709	321	1,573	1,815		48.93
2002	3,963	345	1,774	1,844		46.53

* 자료: 국세청, 국세 통계연보, 2003.

<표 3-2> 과세유형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변동추이

(단위 : 천억원)

년도	계	법인	일반	간이	특례	특례점유비
1998	10,570	8,770	1,538	126	136	2.47
1999	11,718	9,599	1,822	158	139	2.53
2000	13,857	11,370	2,200	212	75	2.07
2001	15,154	12,434	2,454	266		1.75
2002	17,255	14,159	2,825	271		1.57

* 자료: 국세청, 국세 통계연보, 2003.

<표 3-3> 과세유형별 납부세액 변동추이

(단위 : 억원 ,%)

년도	계	법인	일반	간이	특례	특례점유비
1998	273,421	227,908	42,012	2,900	601	1.28
1999	316,566	262,595	50,233	3,256	482	1.18
2000	386,777	320,426	63,002	3,102	247	0.86
2001	417,174	347,894	68,498	782		0.18
2002	469,185	386,239	81,952	994		0.21

*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03

간이과세자는 동일한 부가가치세 제도 아래서 과세유형간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의 편의나 또는 기장의무의 면제등은 영세사업자 보호의 취지에 일치한다고 할 수 있으나 낮은 세부담과 각종 책임과 의무의 면제는 상대적 불평등을 초래하게 된 것이다. 특히, 대부분의 간이과세자가 사실상 매출과세표준을 누락하여 부당한 간이과세자로서의 대우를 누리고 있으며 이에 그치지 않고 세금 계산서의 흐름을 단절시켜 과세표준 현실화의 중요 장애물이 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는 일반소비세로서 소비자가 담세자이나 간이과세자는 소비자를 담세자로 여기지 아니하고 매출액의 일정액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사업에 부수되는 비용으로 인식하여 상대적으로 일반사업자와의 가격경쟁과 사업이익 실현구조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게되며 결과적으로 일반사업자의 납세의욕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발생시켰다.

현행 간이과세제도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⁴⁾

첫째, 간이과세자의 거래금액의 탈루가 크다는 점이다. 이는 과세표준이 4

4) 김완석, “납세환경의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소, 2000, pp.137~139

천8백만원 미만으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현행 간이과세자는 직전 1억원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를 말하는데, 연간 공급대가 4,800만원을 1일 매출액으로 계산하여 보면 131,506원이다. 전체 개인사업자중 절반 수준에 육박하는 46.52%에 상당하는 사업자가 1일 매출액이 13만원정도에 그친다고 하는 점은 수궁하기 힘들다. 당해 업종의 소득률이 10%라면 1일 매출총이익이 1만3천원에 그치고, 영업장임차료·인건비 기타비용을 공제하면 오히려 손실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간이과세제도는 세금계산서의 수취유인기능이 일반과세제도보다 약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의 정상적인 작동을 막는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간이과세자는 수취한 세금계산서 등에 기재된 매입세액에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만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따라서 매입세액의 전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납부세액을 산정하는 일반과세자보다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유인이 약할 수밖에 없다.

특히 납부의무면제 계층에 속하는 사업자는 전혀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즉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것을 기피하기 위하여 고의로 세금계산서 수취를 회피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 표 3-4 >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급별 현황(2002.2기)

(단위 : 명, 백만원)

	인원	비율	과세표준	비율
계	1,843,894	100.00	13,313,520	100.00
12미만	1,580,872	85.74	7,287,719	54.74
12이상	263,022	14.26	6,025,801	45.26

*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03.

이로 말미암아 부가가치세제에 있어서 마치 동맥과도 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세금계산서제도가 간이과세제도로 인하여 동맥경화현상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거래의 과정에 따라 세금계산서가 수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간이과세자와의 거래단계에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의 수수가 차단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또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데, 이로 말미암아 그 다음 단계이후의 거래과정이 은닉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특히 업태를 소매업으로 위장하고 있는 도매업의 경우가 문제가 된다고 하겠다.

셋째, 간이과세자와 같은 과세특례제도가 영세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위한 예외적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그 적용대상자의 폭이 지나치게 넓어 개인사업자의 절반 정도에 육박하는 기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사이의 세부담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점이다. 간이과세자는 대체로 일반과세자의 세부담의 10%~50%정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겠다. 또한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경정조사나 납세지도 등과 같은 행정력의 행사 범위밖에 존재하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므로 간이과세자는 간이과세제도라는 보호막아래 오랫동안 안주할 수 있는 것이다.

부가가치세는 세무행정상 간이과세제도와 같은 예외가 인정되는 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함으로써 사실상 조세회피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셈이다.

제2절 세금계산서제도

1. 세금계산서의 중요성

현행 부가가치세 제도는 전단계매입세액 공제방식으로 부가가치 창출의 기초

가 되는 원재료등을 매입하여도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아니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어 부가가치세 납부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제도이다.

즉, 부가가치세 제도에서 세금계산서 제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런만큼 세금계산서의 진실성은 중요한 요소이다.

모든 사업자의 과세표준 현실화의 시작은 정직한 세금계산서 발행과, 수수에 있으므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을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성실하게 주고 받고 이를 근거로 성실한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을 것이다.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정확한 부가가치세 납부액을 계산할 수 있으며 법인의 법인세 또는 개인의 사업소득세를 계산할 때 매출세금계산서는 법인의 익금총액 개인의 총수입금액이 정확하게 계산될 수 있으며 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법인의 손금총액, 개인의 필요경비를 구성하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세금계산서가 정직하게 수수되지 아니한다면 부가가치세가 탈루됨은 물론이고 익금총액 또는 총수입금액이 누락되거나 손금총액, 필요경비를 구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다른 2차 탈세로 연결되거나 부당한 회계처리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다. 또한 세금계산서는 과세행정상의 과세자료로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⁵⁾ 매출액의 탈루는 소득금액의 탈루로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의 과세자료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소득세·법인세·특별소비세 및 주세 등의 과세자료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2. 세금계산서제도의 실태 및 문제점

세금계산서는 근거과세의 가장 중요한 기초자료 임에도 발행과 수취가 사업자의 자율에 방임되고 있어 사업자 상호간의 담합에 의하여 발행이 생략될 가

5) 催明權, 「附加價值稅法論」, 조세통람사, 1998, P.378

능성이 있고 전단계에서 무자료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최종단계로 계속하여 무자료 거래가 이루어져 유통의 각 단계마다 무자료 거래가 계속되는 악순환이 발생하며,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자 하여도 거래상대방이 수취거부하는 경우에는 발행하지 못한 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자가 아닌 제3자에게 매출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제3자 사업자의 조세포탈을 방조하는 경과가 초래된다. 또한 사업자등록 신청전의 사업 준비기간 동안에 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업자등록 신청일 기준으로 20일이전에 받은 경우에는 공제되지 아니하도록 세법에 규정되어 있어 이 기간중에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불필요한 과세자료가 되고 따라서 수취의욕을 상실하며 공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을 수 있는 여지가 제공된다.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등의 수수정도를 측정하기는 어려우나 그 수수정도가 낮은 것만은 분명하다.

무자료거래에 있어서는 공급자와 공급받는자 모두 과세자료를 수수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탈루가 가능하다. 또한 공급받는자가 가계소비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등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통상적인 경우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와 같이 공급자와 공급받는자 모두 이익이 되기 때문에 무자료거래의 유혹이 상존한다.

1) 무자료거래

무자료거래란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실물거래를 하면서 이에 따른 세금계산의 기초자료인 세금계산서 등과 같은 과세자료를 수수하지 않는 전형적인 탈세거래를 말한다.⁶⁾

6) 장춘, “기초과세자료 산출체계 확립방안“, 한국조세연구원, 1997, p.119.

무자료거래의 뿌리는 전근대적인 전통사회로부터 이어져 내려오고 있으며, 어느 한 지역이나 특정품목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전국에 걸쳐 1차산업에서부터 2차·3차산업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무자료거래는 정상적인 거래에 비해 세금등의 거래비용이 저렴하고 과세자료를 누락시키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소득세, 법인세 등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어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무자료거래를 선호하고 있다.

2) 위장거래

위장거래라 함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은 사실상 이루어졌으나 세금계산서의 수수가 변태적으로 이루어진 거래를 말한다. 이러한 위장거래는 실제의 재화등의 흐름과 세금계산서상의 재화등의 흐름이 상이하여 실제로 재화등을 공급받았으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는 사업자와 실제로 재화등을 공급하고서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사업자의 세금탈루를 초래한다. 나아가서는 이들로부터 실제 재화등을 공급받은자와 그 자로부터 다시 재화등을 공급받은자 등도 연쇄적으로 세액을 포탈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3) 가공거래

가공거래라 함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만 수수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한자를 실무에서는 자료상이라고 부른다.

자료상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안되지만 공급받는자의 세금계산서 수취기피로 인하여 실물의 흐름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사업자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으면 안되지만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기피로 말미암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고 있는 사업자의 접점지대에서 기생하게 된다. 이 자료상은 부가가치세 제도를 교묘히 이용하고 사업자의 탈세본능 혹은 보상심리를 이용하여 개인의 사욕을 채기는 세금계산서 질서 파괴범이기에 과세당국의 끝없는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아니하고 있다.

4) 부실거래 발생원인

이상과 같은 부실거래의 발생원인을 유통구조측면, 제도적측면, 행정운용적측면, 사회환경적면으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⁷⁾

첫째, 유통구조측면에서 보면 소규모 형태의 제조와 도매기업의 난립은 우리나라의 좁은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한 과다경쟁상태를 초래하여 낮아지는 이윤율의 제고, 유통비용의 절감과 함께 기존 거래처 확보의 수단으로 무자료 및 위장가공거래행위가 행하여 지고 있다. 또한 전근대적인 유통구조로 영세한 제조·도소매기업의 경우 불황시에는 투매하고 호황시에는 폭리를 취함으로써 재화의 가격이 다원화됨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세금계산서 수수를 어렵게 하는 변칙거래가 성행하고 있다.

둘째, 제도적측면에서 보면 조세부담과 절차면에서 특혜를 인정하고 있는 과세특례제도는 간이과세자로 안주하여 세부담을 줄이려는 소규모 사업자로 하여금 세금계산서 수취 기피심리를 유발하여 부실거래가 이루어 지고 있다.

셋째, 행정운영측면에서 보면 제출된 신고서, 세금계산서 및 전산출력자료등의 분석활용과 위장가공협의거래처에 대한 추적조사가 미흡하여 부실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효과적인 대처를 못하고 있다.

7) 서희열,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제도와 회계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1986, pp.115~117

넷째, 사회환경적인 측면에서 보면 국민의 조세에 대한 개념이 아직도 “일방적인 의무”로 인식되는 면이 있어 세금계산서 수수기피나 위장가공세금계산서의 수수행위를 범칙행위로 인식하지 않고 묵인·방관하는 거래풍토가 남아 있고 또한 전근대적인 생활관의 상존과 비과학적인 기업경영의 결과로 영수증 주고 받기를 당연시하는 사고와 관습이 사회전반에 보편화되어 잊지 못하므로 인하여 부실거래 생성을 억제하지 못하고 있다.

제3절. 신용카드제도

1. 신용카드제도 및 시행성과 분석

신용카드는 이를 제시함으로써 현금과 수표에 갈음하여 재화나 용역을 구매할 수 있는 제3의 화폐로서 지급수단의 일종이다. 신용카드는 자본주의사회가 고도화되면서 현금경제가 신용경제로 변화되고 소비자들도 사용권 획득을 중요시하는 경향을 갖게되어 “구매는 지금, 지출은 나중에”라는 새로운 소비형태로 카드이용자의 신용을 이용하여 현금없이도 상품이나 용역을 구매하고 신용카드 회사는 일정액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그 대금을 가맹점에 지불하고 추후에 카드소지자에게 회수하는 일종의 신용보증과 동시에 지불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국내 신용카드 발급현황 및 사용현황과 가맹점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1990년대 초에 10%이상의 상승세를 꾸준히 이어가다 1993년 신용카드 이용한도 규제가 완화되고 금융실명제가 실시되면서 매년 30%이상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그 후 1997년 IMF를 거치면서 소비생활의 급격한 둔화로 카드발급이 저하되고 이는 1999년까지 계속된다. IMF관리체제가 어느 정도 풀리면서 2000년부터는 소비생활의 정상화나 금융기관의 대출억제로 신용카드 사용이 대폭적으로 증가

되어 가고 있다.

국세청은 조세저항 없이 공평과세를 실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하여 고민해 왔으나 이제 신용카드 등 인프라에 의하여 공평과세가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고 각종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신용카드등 과세자료 인프라에 의하여 과세근거 포착이 어려운 업종과 신용카드가맹을 기피하거나 가맹을 하였더라도 사용을 기피하는 업소등 취약분야도 많이 남아 있다.

2. 신용카드 변칙사용 실태와 문제점

1) 신용카드변칙사용의 실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이용한 변칙사용의 실태를 살펴보면, 신용카드 가맹점이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고 허위의 매출전표를 작성하여 이를 카드회사에 제출하여 대금 청구한 경우, 카드회원이 가맹점과 공모하여 거래없이 허위로 매출전표를 작성하여 은행으로부터 현금을 지급받는 경우와 가맹점간의 매출전표량도·양수하는 경우, 가맹점이 다른 업소이름으로 매출전표를 작성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지금까지 과세표준 현실화가 가장 안된 업종은 유흥업소, 음식점, 서비스업 등 최종소비자와 직거래하는 업종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들 업종이 신용카드를 변칙거래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소비자들에게 무기명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고 카드할인업소를 통하여 일정수수료를 지불하고 할인한다. 특히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사치성 유흥업소등은 할인료를 지불하고 상대편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더라도 특별소비세의 탈세가 가능하므로 변칙거래가 심하며, 이것을 처리해주는 카드할인업소는 일정기간만 존재하였다가 사라지는 유행업체로서 폐업자

의 이름을 빌려서 하는 경우이거나 재산이 전혀 없는 자의 명의를 빌리는 경우 등 여러 가지 수법으로 일정기간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대량 처리하고 일선세무서에서 신용카드 자료처리 직전에 사라지기도 한다. 이들은 신용카드업법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지라도 대부분 가벼운 벌금형만 받고 풀려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철저한 조사를 하여 주장하더라도 재산을 도피시킨 후이므로 행정력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추징세액은 결손처분으로 종결하는 사례가 많다.

2) 신용카드제도의 문제점

(1) 가맹점 수수료등의 전가

신용카드로 대금결제를 하게되면 신용카드가맹점은 매출액의 증가를 기대할 수 있지만 과세표준이 노출되어 세부담이 증가하게 된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더 요구하거나 가맹점이 부담하는 수수료를 전가하여 카드회원을 현금고객보다 불리하게 대우하여 카드결제를 꺼리는 실정이다.⁸⁾

현재 국내 신용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율은 평균 2.86%정도로 미국(1.9%)과 프랑스(0.81%), 영국(1.6%), 호주(1.3%)등 선진국의 최고 두배나 돼 가맹점이 신용카드결제를 기피하는 바람에 신용카드 활성화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2) 과세표준의 과소신고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세법 규정을 이용하여 구분 기재하는 봉사료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실제보다 과다하

8) 김동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현실화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2003, p.44.

게 기재하여 과세표준을 과소하게 신고하는 사례가 많다. 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항에서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7호 및 시행령 제184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봉사료를 계산서·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기재하는 경우로서 그 구분 기재한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는 원천징수하여야 하므로 20%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표시하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을 줄이게 되어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고 있다.

(3) 위장가맹점 카드매출

신용카드를 불법으로 이용하는 자들은 카드매출전표의 유통을 위하여 위장가맹점을 설치하여 카드전표의 불법유통, 부정대출등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으며, 이는 길거리나 신문지상을 통해 카드대출을 공개적으로 광고하고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위장 가맹점의 매출액 신고를 위하여 가공자료나 위장 자료를 자료상으로부터 매입하는 등 신용사회 및 세금계산서 수수질서를 문란케하는 커다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또한 과세유혹장소 운영자들은 특별소비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위장가맹점을 개설하거나 위장가맹점 개설자에게 신용카드 전표를 양도하고 있다.

3) 신용카드영수증과 세금계산서 중복발행으로 인한 문제점

부가가치세 신고에 있어서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이중으로 발행하는 경우에 착오로 인하여 이를 이중으로 일반매출과 기타매출로 신고하는 사

레가 빈번히 발생하고 세무서에서 수취한 카드회사 자료와의 대조시 차액분에 대한 소명을 위한 세무서방문을 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정부는 이에 2004. 1. 1일부터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함께 교부하지 못하도록 개정하였다. 즉, 공급받은 자는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의해 매입세액의 이중 공제가 가능하고 공급자는 회계처리가 복잡하며, 불부합자료 발생에 따른 소명자료의 제출 등으로 인하여 납세자 불편을 초래하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또다른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즉, 신용카드영수증상 공급받는자 인적사항 미기재되어 사업자의 경우 거래의 증빙에 대한 보수성향으로 인해 세금계산서를 추가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발행하는 사업자의 입장에서 이중으로 발행하는데 대한 제재조치는 현재 없는 상태이다. 또한 공급하는 자가 신용카드이면에 확인한다하더라도 쌍방간의 거래증빙으로 조사 이전에 검증은 불가능하다는 것이고 이는 이면확인을 하지 않은 것도 사업자의 임의 선택에 따라 공제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결제수단의 다양화로 인하여 여전히 신용카드자료와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불부합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이다.

현행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에 의거 카드번호 및 매입처별 매입내역을 기재하도록 되어있으나 사업자로서는 일일이 카드번호 및 거래내역을 수동입력하고 과세관청입장에서는 수동으로 제출한분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자료 입력절차를 거치도록 되어있어 자료구축을 위한 행정력투입이 요구되며 납세자가 전자신고통하여 부가가치세신고서제출시 신용카드수취명세서를 작성하더라도 온라인상에서 입력하기란 번거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신고마감일의 전산 과부하로 신고서 입력도 어려운 현실에서 납세자는 엄청난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4절. 성실납세자와 불성실납세자에 대한 정책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제도는 납세자가 자율적으로 신고하고 과세관청은 이를 사후검증하는 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러한 신고납부제도에서는 납세자의 성실신고여부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납세의식은 일제강점기와 6.25전쟁, 비민주적인 정부를 지나오면서 조세의 건전한 납부가 국민모두의 의무라고 인식하기 앞서 조세를 포탈하고 적게 내는 것이 미덕으로 인식되어져 온게 사실이다.

최근 모범납세자 지정제도 및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등을 통해 성실납세자를 우대하고 불성실납세자를 사회적으로 지탄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국민의 납세의식도를 점진적으로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이에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정책으로서 모범납세자지정제도 및 불성실납세자에 대한 조사 및 처벌등의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도록하고 외국의 성실신고 유인을 위한 제도를 살펴보도록하겠다.

1. 성실납세자 우대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1) 현행 모범성실납세자 지정제도

(1) 모범성실납세자 제도 시행배경

사업실적에 따라 세법에 충실하게 신고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는 성실납세자를 실질적으로 우대하여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납세문화를 정착시켜 납세자들이 기분 좋게 세금내는 성숙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자 모범성실납세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 모범성실납세자 선정기준 및 절차

- ① 선정기준 : 아래의 요건을 갖춘 기업으로서 「모범납세자심사위원

회」 심의를 통과한 사업자

- 5년 이상 계속사업자
 - 최근 3년간 후자신고한 사업자
 - 3년간 위장·가공자료 수수사실 없는 사업자
 - 3년간 신고소득률이 양호한 사업자
 - 3년간 체납사실(대표자 체납 포함)이 없는 사업자
단, 국세의 경우는 체납횟수가 3회 이하이며, 체납세액이 고지건당 50만원 이하로서 납기경과 후 1개월 이내에 납부한 경우는 선정, 지방세는 심사위원회 심사일 현재 체납세액이 없어야 함
 - 조사결과매출누락, 가공경비계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분식결산 및 부당내부거래 등이 없는 사업자
 - 기타 다른 납세자에 비해 성실하게 신고한 사업자
- (3) 모범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내용
- 3년간 세무조사 면제
 - 징수유예·납기연장시 납세담보 완화(최고 3억원까지)
 - 「모범성실납세자 전용상담창구」 이용
 - 국세청 홈페이지에 전용상담창구를 설치하여 「모범성실납세자」의 세무상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해결
 - 104개 세무서 민원봉사실 「성실납세자 전용창구」에서 민원증명발급 등 우선 처리
 -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표창 대상자로 우선 추천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시 신인도부문 가점 부여
 -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 항공이용 편의제공
항공회사(KAL·아시아나)의 우수고객 카드 발급 및 항공사 라운지 이용 및 국내선 공항 의전주차장 이용

- 국민은행·신한은행의 최고등급 고객으로 우대

국세청은 모범성실납세자 지정제도를 도입하여 2003.10.16일부터 현재까지 제5회에 거쳐 모범납세자를 지정하여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이들에 대한 각종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기지정된 모범성실납세자들의 명단을 보면 법인에 편중되어 있고 일정규모이상의 고액납세자에게 국한되어 일반 납세자들에게는 거리가 먼 제도로 치부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소규모사업자들의 성실납세사례도 적극 발굴하여 성실납세자로 지정하면 그 유인효과는 더 클 것이므로 앞으로 모범성실납세자제도의 확대운영할 필요가 있으리라 본다.

2. 불성실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현황 및 문제점

1) 세무조사 현황

조세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는 세무조사와 조세처벌제도이다. 그런데 그동안 세무조사 실적은 극히 부진하여 그 본래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였음을 알수 있다.

< 표 3-5 >연도별 부가가치세 경정조사 실적

(단위 : 명)

기 별	총사업자수	조사인원	조사비율
2000.1	2,123,974	2,445	0.12
2000.2	1,963,907	3,172	0.16
2001.1	2,053,927	3,396	0.17
2001.2	2,187,094	6,326	0.29
2002.1	2,295,111	4,772	0.21
2002.2	2,405,400	5,263	0.22

* 자료 : 국세청, 국세청통계연보, 2003.

2) 조사대상업체의 선정의 객관성 결여

제한된 시간과 인력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조사대상업체의 선정이 과학성·객관성을 결여함으로써 세무조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지 못하였다. 특히 지금까지 세무조사대상을 납세신고의 성실도와는 관계없는 정치적인 목적이나 자의적 기준에 의하여 선정하여 온 측면도 없지 않았다.

3) 조사인력의 전문성 부족

그 동안의 조사범위의 축소로 말미암아 세무조사의 경험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숙련된 조사요원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에 있다. 특히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업종별 조사전문화를 이루지 못하여 효율적인 세무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전산조직에 의한 장부의 작성 및 보존이 급속도로 일반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산조사기법이 개발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다.

또한 경제거래의 국제화 및 세계화·전자상거래의 급속한 확산 및 과생금융상품의 다양화등은 필연적으로 조사요원의 전문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하겠다. 특히 전자상거래의 급속한 확산으로 말미암아 개별 납세자의 확인과 거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취득이 어려워지며, 거래의 중개기관이 없어짐에 따라 과세포착지점을 파악하기 곤란하여지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3. 외국의 성실신고 유인을 위한 제도⁹⁾

Allingham and Sadmo(1972)는 범죄경제학(economics of crime)의 기본구조를 사용하여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하에서 납세자의 탈세규모

9) 한국조세연구소, “녹색신고 납세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2003년.

기대치를 최대화하는 납세행위를 분석하였다. 이 결과를 토대로 납세자의 성실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세무조사대상 선정비율 조정과 발각되었을때의 가산세율 조정등이 주로 사용되었다. 특히 선진국들은 성실신고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우리나라 보다 훨씬 높은 조사선정 비율과 가산세율이 적용된 정책수단을 주로 이용하여 변화함에 따라 납세자 개개인의 소득에 대한 발생원천이 다양하고 복잡해져 납세자의 다양한 참여와 협조 없이 세무조사만으로 납세자들의 다양한 소득에 대한 세밀한 정보를 포착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세계 각국은 다양한 조사방법과 객관적인 조사대상자 선정기법을 개발하여 성실신고자는 보호받고 성실하지 못한 납세자는 필연적으로써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인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세무조사 및 가산세율 조정 같은 조세정책수단외에 성실신고자에게 세제상 우대를 해주는 녹색신고제도와 청색신고제도라는 별도의 정책수단을 마련하여 납세자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성실신고납세를 유도해 왔다. 성실신고납세를 위한 주요한 정책수단을 나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미 국

조세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는 세무조사와 조세범처벌제도이다. Allingham and Sadmo(1972)원 연구결과에서 보았듯이 성실신고납세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모든 납세자를 빠짐없이 세무조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겠지만 제한된 시간과 인력의 한계로 모든 납세자를 조사할 수는 없다. 이런 이유로 미국에서는 조사대상자를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적정률을 선정하여 불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조사를 통하여 가혹한 처벌을 하고 성실신고자는 보호하는 정책을 쓰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조사대상 선정제도인 DIF(Discromonant Function Mwthod)제도와 TCMP(Taxpayer Compliance Program)제도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DIF 제도

DIF제도는 총합수 선택제도로써 신고서의 항목별 중요성에 따라서 일정한 계수를 부여하고 신고서의 오류가능성을 총합수로 표시하는 방법으로서 총합수가 크면 신고서의 오류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나타낸다.

(2) TCMP제도

납세자 순응도 측정 프로그램인 TCMP제도는 국세청의 납세자 신고수준 측정계획에 의하여 모든 신고서 중에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 무작위로 조사대상을 선정하는 방법이다. 납세자 신고수준 측정계획은 납세의무자를 업종별·규모별로 선정하여 표본조사를 함으로써 특정업종의 성실신고가 어떤 요소 또는 항목에 의하여 좌우되는지를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가중치를 정하여 DIF를 보완·발전시키기 위한 기초 Data를 수집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납세의무자의 납세협력정도를 측정하는 수단으로서도 유용성이 크며 이 방법에 의하여 납세자들의 성실도를 검증하여 그 중 약 2%정도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급여의 원천징수보고서·이자배당지급보고서등의 정보 신고서를 중앙컴퓨터시스템에 의하여 납세자가 제출한 소득세 신고소득과 대조하여 납세자가 자신의 소득을 정확하게 신고하였는지를 확인하는 정보신고서 조회인 IRP(Income Reporting Project Method)방법과 부정확한 신고서를 빈번하게 작성한다고 보여지는 신고서 작성대행업자들이 작성한 신고서를 모두 조사하는 프로젝트 선택방법을 활용하여 납세자들의 성실도를 분석하고 있다.

2) 프랑스

프랑스의 조세행정상 중요한 특징은 납세자의 조세채무확정을 주로 “서면으로 그리고 조회방식”에 의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는 점이다. 즉 서면조사방법에 의한 조세채무확정을 기본적으로 하면서 납세자의 설명과 입증의 방법을 보조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는 프랑스의 세법체계가 납세자들이 기장하여 신고한 내용의 성실성에 대한 “신뢰”를 전제로 세무행정이 시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

다. 이것은 납세자들이 이런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을때는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가혹한 세무조사등의 “제재”를 가할 수 도 있고 또한 이런 제재행정에 대해 사회적으로 보편적인 동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이런 근거로 납세자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기장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산출한 소득을 성실하게 신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서면조사“에 의한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제도가 납세자의 기본권과 사생활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은 ”세무조사“보다는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인권침해의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세제도라 말할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서면조사 방법이 세무조사 방법에 비해 조세적정절차가 규정된 조세법률주의에 보다 충실한 민주적인 조세행정으로 평가 받고 있다.

여기서 서면조사의 성패는 납세자의 장부기장에 의한 신고내용이 “성실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고 또한 서면조사의 실효성측면에서 보았을때 서면조사는 주로 과세관청이 “이미 확보하고 있는 정보자료”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되고 있는 정보의 “양과 질”에 따라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있을수 있다. 즉 과세관청이 보유하고 있는 납세자에 대한 과세정보자료와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의한 “서면조사”가 “세무조사” 못지않게 성과를 올릴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될 것인가가 중요한 고려요인이 되며, 이를 기준으로 서면조사의 효율성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정보화와 전산기술의 발전에 따라 사회의 투명성은 높아지며 사회가 투명하면 투명할 수록 과세관청이 취득할 수 있는 과세자료 양과 질이 높아지기 때문에 서면조사의 효율성에 대한 의심을 희석시킬수 있다고 보며 이미 선진국에서 이에 대한 입증이 되고도 남음이 있다.

3) 일본의 청색신고제도

일본은 성실신고를 전제로한 신고납부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소화 25년(1950년) 샤우프 권고안에 기초한 전면적인 세계개편, 즉 소득

세를 신고납부제도를 전환하면서 청색신고제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세리사 제도를 신설 도입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을 펼쳤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청색신고제도 개요

청색신고제이란 납세자가 스스로 소득금액 및 세액을 계산하여 자주적으로 신고하고 납세하는 신고납세제도를 근간으로 적정과세를 실현하는데 불가결한 장부의 정확한 기장을 추진할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적합한 형식의 장부서류를 구비하여 충실히 거래내용을 기재하고 또한 이를 보존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청색신고서에 의한 신고를 승인하고 청색신고서를 제출하는 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청색신고서에 의한 신고를 승인하고 청색신고서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추계과세를 인정하지 않는 등 납세절차상의 특전과 각종 준비금, 이월결손금, 손해금 공제등과 같은 소득계산상의 특전도 주어지는 제도이다. 이들 청색신고 납세자에게는 장부서류를 비치하는 일정 수준의 기장을 계속적으로 이행함(기장의무)과 동시에 그 장부서류 일체를 7년간 보존해야 하는 의무(보존의무)가 주어져 있다. 한편, 이들 청색신고자 및 청색법인 납세자에게는 일반 납세자와 비교하여 세제상 유리한 소득금액 계산 및 처우가 인정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것이 청색신고제도이면 이 제도가 일본의 신고납세제도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청색신고제도는 납세자 사이에 정착되고 있어 2000년 현재 개인은 474만이 법인은 260만이 청색신고제도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고 청색신고 비율이 도입초기의 5%에서 53%까지 상승하였다. 이는 청색신고제도가 성실신고납세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였음을 말해주고 있다.

(2) 청색신고의 승인신청과 자격요건

일본의 청색신고제도는 승인신청과 관련하여 자격요건을 특별히 정한 것은 없으나 복식부기에 근거한 기장을 하는 사업자라면 누구나 청색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청색신고를 할 수 있는 기장의 범위를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을 정도의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을 원칙으로 하면서 현금출납장, 외상매출장, 외상매입장, 경비장, 고정자산대장과 같은 장부를 비치한 간이장부도 인정하고 있다. 아울러 청색신고자는 그 기록과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기타 자료에 의거 소득을 산출하고 이들 장부 및 서류를 7년간 보존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이와같은 요건을 구비한 납세자가 청색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그 해 3월 15일까지 “청색신고승인신청서”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해의 1월 16일 이후에 사업을 신규 개업한 자는 개업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

(3) 청색 신고자에 대한 우대

일본의 청색신고 제도는 납세자가 스스로 소득금액 및 세액을 계산하여 자주적으로 신고하는 신고납세제도의 기반적인 적정과세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장부의 정확한 기장을 추진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이 제도가 1950년 도입된 이후 몇차례 정채 또는 감소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속적인 증가를 한 결과 2000년 현재 청색 신고자가 개인은 474만인, 법인은 260만 회사가 청색신고제도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색신고제도가 납세자 사이에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는 데는 청색신고납세자와 일반납세자를 구별하여 청색신고 납세자에게는 세제상 유리한 소득금액계산 및 우대를 해주는 우대정책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서 청색신고자에게 주는 우대정책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청색신고 특별소득공제

① 55만엔의 청색신고 특별 공제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산림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소득에 대한 거래내역을

정규의 부기원칙(일반적으로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을 하고 확정신고기한내에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와 함께 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그 적용받을 금액을 기재하여 제출한 때에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②10만엔의 청색신고 특별공제

55만엔의 특별공제를 받는 사람 이외의 청색신고자로 간이장부 또는 현금주의에 의거 거래기록을 하는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산림소득이 있는 납세자에 대해서 주어지는 특별공제액을 말한다.

(나)가족 중 상근자의 급여공제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산림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청색신고자가 청색사업 가족 중 상근자의 급여에 관한 신청서에 기재된 범위내에서 청색사업가족중 상근자에게 급여를 지불한 경우에는 그 일에 종사한 기간, 업무의 성질 및 제공도 등에 한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이를 적용받을 청색사업가족중 상근자의 요건으로는

- ① 청색신고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배우자나 그의 친족일 것,
- ② 그해 12월 31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일 것
- ③ 그해 6월이상 청색신고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종사하여야 한다

(다) 가사관련경비

가사와 관련된 경비로서 ①업무수행상 필요하고 또한 필요한 부분이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 그 부분에 해당하는 경비와 ①②의 청색신고자의 가사경비에 관련되는 경비중 거래기록 등에 근거한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산림소득을 발생하는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경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라) 수입 또는 비용의 귀속기간 특혜(현금주의)

(마) 특별상각 용인

(바) 대손율의 차등화

(사) 결손금의 이월과 소급공제

(아) 세무조사 10년 기간에 1내지 2회 실시

제4절. 납세 환경과 납세자의식

1. 납세 환경의 문제점

올바른 납세 환경이 구축되기 위해서는 사업자측면에서 유통단계에 따른 세금계산서 수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근거과세가 실현되고, 둘째, 소비자 측면에서는 영수증수수와 신용카드사용이 일반화되어 사업자의 수입금액 검증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간이과세제도가 입법취지 및 합목적성에 적합하게 운영되어야 공평과세와 세수증대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사회 저변에 세금을 면탈하려 하거나 적게 내려는 심리가 만연하고 있어 부가가치세 제도의 발전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현실화에 필수적인 세금계산서 부실수수의 문제가 심각한 상태이다.

소비자 측면에서 살펴보면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영수증이 별로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영수증 수수를 귀찮고 번잡스럽게 여기고 신용카드 사용율또한 최근 사용증가에도 불구하고 선진제국에 비하여는 저조하여 결과적으로 납세자의 탈세를 방조하는 결과가 되고 있으며 특히 기장능력이나 세금계산서 발행능력이 없는 영세사업자보호를 위한 간이과세제도의 운영이 탈세의 방법으로 왜곡되고 있는 실정이다.¹⁰⁾

10) 김동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현실화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2003, p30.

또한 우리나라의 유통환경은 취약하고 영세하여 지금까지는 매출전략과 가격결정등을 제조업체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여 왔다. 그 결과 영세한 유통업체가 난립하고 유통과정의 질서가 문란하고 제조업체에서부터 원칙적으로 수입금액 누락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대부분의 도매업체는 제조업체의 경영방침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단지 판매장려금을 많이 받을 목적으로 과다한 매입을 함으로서 발생한 재고처리를 하기위하여 변칙적인 판매행위를 하고 있으며 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내용과는 별개도 매입세금계산서와 매출세금계산서를 적당히 짤어 맞추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당해 업체의 수입금액 누락은 물론 거래 상대방에까지 무자료로 거래가 연결되어 각종 조세의 탈세에 이용되고 있다. 또한 무자료 상품이 제조, 도매상을 거쳐 소매단계까지 유입되면서 소매업체의 과세표준현실화에도 어려움이 따른다. 음식, 숙박업등과 같이 주로 현금을 받고 재화용역을 제공하는 업종은 실제의 과세표준을 포착하기가 매우 어렵고, 밀수품이나 농수산물도 그 유통구조상 세금계산서 없이 무자료로 유통되어 최종소비자에게 현금판매됨으로서 과세표준의 현실화가 어려운 상태에 있다.

부가가치세 수입금의 누락은 전근대적인 유통구조 현금위주의 구매패턴, 기업의 무리한 판매전략 사업자의 영수증교부에 대한 소비자의 무관심 낮은 납세수준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어느 일부지역이나 일부업종의 한정되지 않고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에 이르기까지 전산업에 걸쳐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는 물론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등 각종 조세가 탈루되고 경제질서를 문란시키며 과세표준 누락분이 비자금으로 악용되는 등 경제사회를 흐리게 하고 있다.

2. 납세자의식의 문제점

1) 조세회피 성향의 납세의식

납세자의 조세의식은 근본적으로 역사적·문화적·경제적·사회적 여러 요인에 의하여 결정된다. 우리나라는 근대적 조세국가로서의 역사는 극히 짧고, 국민의 납세의식이 높지 않아 탈세가 오랜 관행으로 이어져 왔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형성된 공감대이다. 따라서 상거래에 있어서도 거래상대방과의 목계로 서로에게 불리한 일부의 자료를 은폐하고 조작하려는 조세회피 성향적 의식과 오랜 거래관계의 인간적·경제적인 면을 강조하여 상호 조세회피를 도와주는 것이 미덕인양 인식되어져 왔다.¹¹⁾

이와같은 현상이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으로,

첫째, 우리국민이 세금을 수탈의 개념으로 인식하여 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정부와 국민은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관계로 인식되어 조세는 국민에 대한 착취의 수단으로 생각되어 온것이다. 특히 식민치하의 나라 잃은 설움을 일제에 대한 저항과 비협조적인 행동으로 달래게 되었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애국하는 길이라고 생각하여, 일제로부터 해방되어 반세기가 지난 오늘 까지도 피해의식과 저항의식이 우리 국민성의 밑바탕에 남아 있어 조세회피라는 역기능적인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¹²⁾

둘째, 민주시민 정신의 결여를 들 수 있다. 국민의 의식속에 주권재민의 민주사상이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함에따라 의무를 다하고 권리를 주장하는

11) 한상원,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현실화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1994, p.71

12) 국세청, 「탈세 그 유형과 실태」, 국세청, 1982, p.15

민주시민으로서의 정신이 결여되어 납세도의가 정상수준에 이르지 못함으로써 탈세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을 하는 경우 세법과 세무당국에서 요구하는 대로 성실하게 신고하면 “세금내고 남는 것이 없다”라는 말이 일반화되어 으레 적당히 신고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세무행정의 집행면에서도 이러한 여건을 어느 정도 묵인 또는 방관함으로써 “성실하게 신고 납부하는 사람만 손해 본다”는 부정적인 의식구조를 갖게 되었다.

셋째, 급격한 경제발전이 의식구조의 개선이 병행되지 못함으로써 정상적인 윤리관이 왜곡되어 재산의 유무가 인간 평가의 척도로 등장하는 금전 만능의 풍조가 사회 일부를 휩쓸게 되었다. 따라서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축재하려는 불건전한 사고가 횡행,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납세도의를 망각하고 큰 거리낌없이 탈세케하는 요인이 되었다.

넷째, 납세자의 세법에 대한 지식부족을 들 수 있다.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과세를 해도 납세의 무지와 편견으로 소득에 상응한 세액을 납부해야 된다는 인식을 갖기보다는 무조건 적게 내려는 행동양상을 보이며, 자기의 요구조건이 관철되지 않을 때는 조세회피내지는 조세저항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2) 납세교육 및 홍보의 부재

우리나라는 근대조세국가로의 발전된 역사가 길지 못하면 국민의 동의와 필요에 의하여 조세제도를 만들고 발전시키지 못하였으며 대다수의 국민은 조세의 용도, 납부이유에 대하여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세수의 안정적인 확보에 주력하였을뿐 납세교육 또는

납세홍보를 등한히 하여왔던 것이 사실이다. 일본이 1990년 국세청의 예산 중 1%에 상당하는 20억엔을 납세홍보비로 사용하였지만, 우리나라는 1995년 국세청 예산의 0.1%인 4억 4천만원을 홍보예산으로 사용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납세교육 및 홍보의 실태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하겠다.

국민은 주요의무인 국방, 교육과 비교하여도 국민 납세교육과 홍보는 전무하다 할 것이며 납세의식이 발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진신고납부제도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제4장. 부가가치세 정착을 위한 제도와 행정의 개선방안

제1절. 간이과세제도

1. 간이과세제도의 폐지

1) 간이과세제도 폐지사유

장기적으로 본다면 간이과세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간이과세제도는 1977년 부가가치세제의 도입시부터 과세특례제도로 시행되었으나 도입당시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하여 소규모 영세사업자에게 납세편의를 도모하고 행정력을 절감한다는 취지로 인정된 예외적인 제도이었다. 그러나 그동안 수차의 법개정을 통하여 많은 문제점을 개선하였으나, 간이과세제도 본래의 도입취지와는 달리 세부담경감이라는 취지로 인식되고 운영되어 간이과세자들은 매출누락과 세금계산서 수수기피등의 바람직하지 못한 납세형태를 보여왔으며 이러한 납세형태가 세금계산서 수수질서와 상거래질서를 혼란케함으로서 부가가치세제의 기본전제인 근거과세의 확립을 저해하고 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가 도입된지 25년이 지났음에도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세금계산서 작성 및 기장능력의 부족을 이유로 간이과세제도를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크게 설득력이 없다. 13)

또한, 근거과세의 확립을 위하여 중시해야 할 것은 건전한 납세의식의 고찰이다. 아무리 부가가치세제가 합리적이고 선진화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납

13) 김현수, “부가가치세제상 간이과세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2003, p.62.

세자의 납세의식이 이를 수용하지 아니한다면 그 제도는 간이과세제도권에 안주하려는 조세탈세 성향등을 키우게 된다. 더욱이 자진신고 납부제를 채택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제에 있어서 건전한 납세의식을 가지고 납세자의 성실신고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납세의식의 상향을 위해서는 특혜적인 간이과세제도가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간이과세제도 폐지 대안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하고 일반과세제도로 전환하는 경우 전사업자가 동일한 세율과 동일한 과세방법에 의하여 과세되므로 공평과세가 실현되고 근거과세기능이 강화되는 장점이 있으나 일반과세로 전화되어 소규모사업자의 세부담 및 납세협력비용의 증가는 새로운 조세마찰을 야기시킬 가능성이 크다. 세금부담을 다음 단계 또는 최종소비자에게 전가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납세자가 부담하여야 하므로 이런 경우 매출누락, 세금계산서 수수기피 등으로 일반과세자로 일원화되어 정착될 때까지 일실적인 조세저항이 우려된다.¹⁴⁾

본래 간이과세제도가 납세협력의무를 완화함으로써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고자 도입된 제도이므로 동 제도를 폐지하고 일반과세로 전환하는 경우 소규모영세사업자에게 납세협력의무를 적정하게 완화할 필요가 있다.

간이과세제도의 폐지로 인하여 새로 발생하는 납세협력의무로는 세무계산과 기장, 그리고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와 수취의무등 인데 간이과세자들이 정상적인 부가가치세제도에 곧바로 적응하기에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므로 납세협력의무가 과중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일정기간동안 소규모사업자에 대하여는 세액공제제도를 통해 세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적극적으로 병행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14) 최광이우택, “부가가치세제의 정책과제와 개선방안”, 한국조세연구소, 1998, p.146.

2. 현행 간이과세제도하에서의 개선

부가가치세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하여야 하나 현실적으로 시행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현행의 간이과세제도가 존치시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코저 한다.

1) 과세표준 현실화로 인한 간이과세인원 축소

정부는 세금계산서 수수질서의 확립과 신용카드제도의 적절한 활용, 납세자에게 성실신고납부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탈세자에 대한 처벌강화등을 통해 부가가치세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과세표준의 현실화를 꾸준히 벌여서 실제 영세사업자들을 위한 간이과세제도를 운용하여 간이과세의 진정한 취지를 살릴수 있어야 하겠다.

2) 납부의무면제 요건 강화

현행 간이과세자는 당해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1200만원 미만이면 이에 대한 납부세액을 납부할 의무를 면제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소비자로부터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국고에 납부하지 않고 국가가 징수를 포기함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다. 따라서 납부세액 면제제도는 극히 소액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하나 2002년 2기에는 납부의무면제자는 1,580,872으로 간이과세자수 1,843,894명의 85.74%를 점하고 있어 국가의 징수포기범위가 너무 크다고 볼 수 있다. 특히, 1과세기간 공급대가가 1200만원 미만이면 전액 징수하지 않다가 1200만원 이상이면 전액 납부해야 하므로 사업자는 어떻게 하든 1과세기간 공급대가가 1200만원에 미달하게 신고하려고 할 것이다. 즉, 간이과세자의 세부담이 서서히 증가하지 않고 갑자기 공급대가가 1200만원부터 납부의무가 생기기 때문이다.¹⁵⁾ 즉, 이러한 제도들이 점점 납세자를 탈세하도

15) 김현수,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건국

록 유도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만약 소득세라면 본인이 실제적으로 번 순소득금액이 일정규모 미만에 해당되어 국민의 기초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로서 소득세징수를 포기한다 하지만 소비자로부터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것을 부가가치세 이론과 배치되어 부가가치세에 대한 납세자의식을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납부의무 면제자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극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경우에만 납부의무를 면제토록 납부의무면제 요건을 강화하고 그 기준금액도 대폭 낮춰 국민개납의 원칙에 충실여야 한다.

3) 매입세액 공제율 조정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간이과세자가 제출하는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을 업종별로 부가가치율만큼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어 간이과세자가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의욕을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곧 매입세금계산서 수취회피로 이어지고 세금계산서 질서문란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

전시한 내용과 같이 간이과세자라고 하여도 세액의

경감은 바람직하지 아니하기에 일반사업자와 비슷한 수준의 부가가치세가 산정될 수 있도록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폐지 또는 상향하는 것과 균형을 맞추어 전액공제 또는 공제율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2절. 세금계산서제도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확립의 요체는 부가가치세 거래당사자간에 세금계산서

대학교 행정대학원, 2003, p.60.

를 성실하게 교부하고 수취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상적으로 말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이를 공급할때마다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빠짐없이 교부하여야 하고, 이들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는 그 사업의 종류나 규모에 상관없이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고 지정받은 사업자등록번호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시행 이후 이러한 기본 흐름과 원리를 왜곡하여 거래행태에 따른 세금계산서 수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비정상적으로 조작되는 사례가 많아서 부가가치세의 정착을 저해하여 왔다.¹⁶⁾

이에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확립을 위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1. 세금계산서 수취를 유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보완

세금계산서 발행시 가장 큰 장애요인중 하나는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거래 상대방의 세금계산서 수취거부이다. 이러한 거래상대방의 세금계산서 수취거부는 무자료거래나 위장가공세금계산서 교부로 이어지고 거래상대방은 부가가치세 등을 탈루하게 되며, 이러한 부시거래의 악순환은 다음 거래단계에서도 연결고리가 되어 계속 반복된다.

이러한 부실거래가 발생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우선 간이과세자등의 세금계산서 수취기피를 들 수 있다. 이들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취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현행 세액공제율을 대폭 인상할 필요가 있다.

2. 필수적 기재사항에 대한 개선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은 1년을 2개의 과세기간으로 나누고 있으며 이 과

16) 조덕규,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의 현황 및 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세금계산서 제도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세무대학원, 2001, p.44

세기간별로 신고납부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발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 공급시기를 지나서 발행한 경우에는 가산세 또는 매입세액 불공제라는 불이익을 주고 있어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또는 수취하여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날짜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불성실납세자로 취급받고 있다. 또한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만 매입세액 공제를 하여주고 있으나 일반적인 사업 준비기간이 20일보다 더 장기간인 것을 감안하면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매입세금계산서 발행일을 수정할 수밖에 없다면 부가가치세법 스스로 세금계산서 허위작성을 유도하는 결과가 될 것이며 매입자가 매입세액공제를 받기를 포기한다면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도 포기할 것이고 공급자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일은 공급시기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세기간내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지금보다 대폭 낮은 율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공급받는자 역시 매입세액 불공제가 아닌 낮은 율의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이다.

3. 사업자등록 교부조사 철저 및 사후관리 강화

사업장 위장, 업태 및 종목위장, 명의위장, 자료상 혐의자 등 위장 사업자를 예방하기 위하여 먼저 이러한 유형이 많은 사업의 대상업종, 변칙거래 실태과약 및 분석, 방지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팀을 구성하여 연구하고 그 결과에 대해 교재를 작성하여 종사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함과 동시에 대상납세자에게는 이유를 납득할 수 있는 설명자료를 만들어 배포하고 설명하는 등 사업자 등록증 교부 조사시부터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¹⁷⁾

17) 김영오, “부가가치세 시행성과 분석 및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석사학위논문,

또한, 위장혐의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교부시부터 철저히 조사하여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지만 사업개시 당시의 상황으로는 위장사업여부를 완전하게 파악하기란 그리 쉽지 않다. 따라서 위장혐의 종목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후 과세실적을 신고할 때 첫 번째 신고와 두 번째 신고시까지는 신고내용과 등록사항을 비교관찰하여 당초 등록된 사항에 변동이 없는지, 그만큼 규모의 사업이 가능한지를 검토하고 등록사실과 다를 때에는 즉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적법, 타당하게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이들 사업자에 대하여 처음부터 관리가 잘못될 경우 자료상 혐의자거나 단기간 사업을 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영수증을 남발하고 폐업, 도주한 경우에는 많은 행정력이 소모되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자료상 혐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세기간별, 거래처별 매입·매출자료를 집계·분석하여 장기간 정밀조사를 신시하여 탈루된 세금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 또는 신용카드관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당국에 고발, 원천적으로 뿌리 뽑는 길이 해결방안이라고 하겠다.

4. 세금계산서 추적조사의 지속적 실시

무자료 도매시장의 사업자, 무자료·변칙거래가 성행하는 종목 또는 이중 가격형성·매점매석등 경제질서를 교란케하는 품목을 주로 취급하는 사업자 중에서 위장가공거래 혐의자를 선별하여 세금계산서 추적조사 및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 추적조사 및 유통과정추적조사의 결과 조세포탈혐의가 밝혀지는 경우에는 형사처벌하도록 한다.

홍익대학교 세무대학원, 1998, p.40.

5. 부실세금계산서 수수자에 대한 제재강화

우리사회에 세금이 존재하는 한 탈세와 조세회피는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그와 마찬가지로 전단계 매입세액공제제도하에서 세금계산서가 존재하는 한 무자료 거래가 이루어지고 허위세금계산서가 수수되며 이로인해 탈세가 행해지고 있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인 것 같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문란행위를 행정적으로 제재하지 못한다면 상거래질서는 극도로 문란해지고 부가가치세 체계는 크게 흔들리고 말 것이다. 더구나 부실세금계산서 수수는 사업자 서로 간에 경제적 이익이 맞아 떨어져 담합하기 쉽고 부의 축적수단으로 활용되며 범죄의식이 희박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 받거나 이를 알선·중개하는 자는 범법자임에도 우리사회에서 너무 지나친 관용을 베풀고있는 것도 사실이다. 형법에서는 공문서를 위조할 경우 엄격하게 다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위조·변조하여 세금을 포탈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환급받는자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더 큰 문제¹⁸⁾이므로 부실세금계산서 수수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또한, 부실세금계산서 수수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지도단속과 아울러 다음과 같은 제재조치가 필요하다.

첫째, 공급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위장 가공세금계산서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에 대하여는 공급가액 10%(법인은 2%)의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만 부과하고 있는데 이를 강화해서 부실세금계산서를 발행한자에 대하여는 현행의 1%의 가산세를 5~10%로 상향조정하는 것

18) 조덕규,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의 현황 및 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세무대학원, 2001, p.51.

이 보다 합리적일 것이다.

또한, 부실세금계산서에 대한 적용 실태를 보면 자료상 조사나 특별조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가산세만 부과하고 별도의 벌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부실자료 발행자중에서 일정금액 이상자는 반드시 처벌하도록 의무화하여야 한다.

둘째, 자료상으로 적발된 자는 과감하게 언론에 공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본다. 물론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반대의 의견도 있겠지만, 세금계산서 부실수수자에 대한 사회적 지탄을 받게 함으로써 자료상이 근절되고 세금계산서 수수질서가 확립될 수 있다

셋째,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에 대하여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자료상을 검찰청에 고발만하면 조사가 종결되었다고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라 처리결과도 사후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제3절. 신용카드제도

1. 신용카드 사용확대를 위한 제도의 개선방안

신용카드는 카드회사, 가맹점 소비자 3간간이 상호검증 및 견제기능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매출규모와 소득규모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가장 확실한 과세표준 현실화의 수단이 되며 신용카드 사용의 활성화를 통하여 과세당국 인력의 업무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고 건전한 상거래 정착에 이바지 할 수 있어 과세당국은 지속적인 신용카드 사용확대를 유도하여야 한다.

신용카드 사용활성화로 인해 최종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업종의 과세표준 신

장률이 두드러지게 높아가고 있다. 특히 비가맹점 사업자의 0.7%의 신장률보다 가맹점의 28% 신장률은 기초과세자료의 양성화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 표 4-1> 2000년 1기 가맹점 1인당 과세표준 증가율 비교

(단위 : %)

구분	평균	소매	음식	숙박	서비스
가맹점	28.8	27.7	48.3	13.7	29.3
비가맹점	0.7	5.9	16.0	3.4	-7.9

자료 : 국세청, 2000년 국세행정개혁백서, 2001, p.249.

이렇듯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한 정책수단들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성과를 거둘수 있는 정책으로서 신용카드제도 및 2005.1.1일 시행예정인 현금영수증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과세표준의 현실화 및 세부담공평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1)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세액공제 제도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신용카드 가맹자가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목욕·이발·미용업, 여객운송업,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법인인 제외)등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거나 직불카드 영수증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다. 현행 신용카드 매출전표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사업자가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으로 노출되는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등 국세와 지방세인 주민세, 공적보험인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등의 부담을 감안하면 과세표준 현실화를 위한 유인책으로는 너무나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이들 업종은 대부분 부가가치율이 높은 업체로서 부가가치세 측면에서는 매입세액공제액이 적어 납부세액이 급격히 증가하고 소득세측면에서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금액이 적으므로 누진세율 체계를 가지는 소득세율 및 법인세율 적용시 세부담율이 급격하게 높아지므로 사업자는 신용카드 거래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신용카드로 매출전표를 발행하였다고 세액공제를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우스운 일이지만, 신용카드의 사용 확대로 인하여 사업자의 과세표준이 현실화되고 그에 따른 세수증대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최소한 사업자의 신용카드수수료부담만큼은 보전할 수 있을 정도로 세액공제를 상향조정하고 연간 500만원 한도를 폐지하여야 한다. 또한 2004. 1.1일부터 신용카드발행에 따른 공제율이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의 2%에서 1%로 줄어든 것은 신용카드사용확대에 오히려 역효과를 미칠 것으로 사료되며 정부는 단기적인 세수증감에 연연하지 말고 과세표준의 현실화 와 세부담 공평화라는 커다란 명제아래 일관된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2) 신용카드영수증 복권제도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하여 정부, 언론기관, 시민단체등에서 신용카드 가맹 및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이에 국세청에서는 신용카드 사용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대만에서 시행하고 있는 영수증 복권제를 연구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발전적 대안으로 [신용카드영수증 복권제] 를 2000.1.1부터 시행하고 있다.

신용카드 영수증은 신용사회 정착과 자영업자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한

가장 실효성 있는 수단으로 특히 현금수입업종의 신용카드 상요증가는 대부분 과세표준의 증가를 가져오고 있다. 또한 신용카드는 가입 및 사용내역이 전산처리되어 관리통제가 용이하고 금융기관이 매개되어 성실신고 여부를 완벽하게 검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신용카드를 사용함으로써 별도의 비용없이 과세표준이 현실화되고 부가가치세등 조세수입이 늘어난다고 볼 때 복권 당첨금 지급액을 상향하고 당첨자를 늘려 그 혜택을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3) 근로소득자 신용카드 사용 소득공제

근로소득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신용카드 직불카드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포함하여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의 20%(연간 5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금액중 적은 금액을 한도) 소득공제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시행한 결과 가계소득중 신용카드 사용이 상당한 수준임에도 실제로 공제되는 금액은 그리 많지 않아 근로소득자와 시민단체는 공제수준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현행제도가 “세액공제”방식이 아니고 “소득공제” 방식이기 때문에 저소득자에 대한 혜택보다는 오히려 고소득자에 대해 세부담의 경감혜택이 더 많이 부여된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신용카드사용 활성화방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모든 근로소득자인 소비자가 공정한 혜택을 누리고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유인하기 위하여는 세액공제 제도로의 전환이 시급하여 아울러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사업상 필요경비로 처리하지 아니하는 신용카드 사용액은 일정액을 세액공제하여 신용카드사용을 활성화함으로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현실화를 앞당기는 방안일 것이다.

4) 신용카드 변칙거래자에 대한 처벌강화

신용카드 변칙거래자들은 신용카드업법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지라도 대부분 가벼운 벌금형만 받고 풀려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철저한 조사를 하여 주장하더라도 재산을 도피시킨 후이므로 행정력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추징세액은 결손처분으로 종결하는 사례가 많다. 엄정한 조사와 고의적인 탈세에 대해서 무거운 가산세뿐 아니라 조세범으로 처벌되어야 한다. 그래서 탈세를 하면 사회적인 매장을 당하고 이후에는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없을 만큼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

2. 신용카드 발행분 세금계산서 교부금지에 대한 개선방안

현행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세금계산서로 인정받는데는 한계가 있다.

즉,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서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인데, 이중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는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보수성향의 사업자들은 이를 매입세금계산서로 인식하는데 소극적이며 과세당국의 입장에서도 세금계산서처럼 상호 제출을 통한 검증을 할 수 없어 항상 자료발생할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서 사업자의 법인카드(법인 및 개인사업자들이 사업상 등록한 카드)에 신용카드에 사업자등록사항을 내장토록 함으로서 매출자의 경우 별도의 신용카드발행집계표를 작성할 필요없이 신용카드회사에서 보내오는 매출내역서를 제출하면 되고 매입자의 경우에도 신용카드사용내역서에서 공제받지 못한 내역을 제외한 부분을 신고함으로서 수동으로 서식을 작성하여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 과세당국에서도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수신된

데이터를 과세자료화 함으로써 거래상대방의 신고내역을 쉽게 대조가 가능하여 업무량 축소 및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3. 현금영수증제도

국세청은 2005년 1월 1일부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에서 5,000원 이상 물품을 구입하고 현금과 함께 카드, 핸드폰번호등을 제시하면 가맹점에서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현금거래 건별 내역을 국세청으로 통보되는 현금영수증제도를 시행하게 된다.

이 제도는 신용카드소득공제와 같이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액 현금매출을 하는 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여 과세표준을 양성화하는데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사업자의 측면에서 현금영수증제도의 시행으로 인한 급격한 세부담 증가로 또 다른 제도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자측면에서 유인책을 적절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

제4절 성실납세자 우대 및 불성실납세자에 대한 처벌강화

1. 성실납세자 우대

현행부가가치세법은 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 제도는 사업자의 자율적인 참여와 납세의식이 없으며 성공하기가 매우 어려운 제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성실한 납세자를 선발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고 성실한 납세자는 세무조사의 불이익을 받지아니한다는 믿음과 확신을 주고 불

성실한 납세자는 꼭 세무조사를 받고 세무조사를 받으면 불이익이 성실납세자가 납부한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서 조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의욕을 감소시켜 성실납세를 유인하여야 한다.

성실납세자 제도를 도입하고 우대정책을 개발한다면 납세자는 세무조사를 대비한 장부의 작성과 보관, 세무조사에 따른 영업의 지장과 손실이 줄어들고 세무조사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되고 성실납세자로서 납세의식이 함양될 수 있으며 정부는 징세비용이 절감되며 지금까지의 순환조사방식에 의한 세무조사를 불성실사업자에 대한 조사로 한정할 수 있어 효율적인 세무조사의 집행이 가능하며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조세행정의 신뢰를 제고하고 납세에 대한 국민의 의식을 함양할 수 있으며 성실납세자가 되기 위하여는 세금계산서 수수등 근본 거래자료가 충실하게 될 수 밖에 없어 과세표준 현실화와 근거과세에 한층 접근 할 수 있을 것이다.



2. 불성실납세자에 대한 대한 처벌 강화

신고납부제도하에서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성실신고를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익이 높도록 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 즉, 불성실신고를 할 경우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을 높이고 불성실신고자로 확정되면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불성실 신고로 인한 기대손실이 기대이익보다 훨씬 높게 제도를 만들어야 하며, 조세시효도 신고자의 평생기간으로 늘려야 한다. 실질적으로 기대손실이 불성실신고를 함으로서 얻게 되는 기대이익보다 크다는 것을 누구나 알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불성실 신고로 인한 기대손실을 기대이윤보다 조금 높게

만들면 위험을 감수하고 불성실신고를 하는 납세자로 있을 것이다.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려는 납세자들의 불성실신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벌과금을 대폭 강화하여 기대손실을 높여야 한다. 신고납부제도하에서는 납세자들에 대해 개인의 윤리와 도덕만을 강조함으로써 성실신고를 유도할 수는 없다. 신고납부제도하에서는 개인이 불성실신고를 할 경우 경제적으로 손실을 입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유도하여야 한다.

신고납부제도가 일찍부터 시행된 미국은 비교적 제도가 잘 정립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납세자들이 정직하기 때문이 아니라 납세자들이 성실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유도하기 때문이다. 소득추계모형과 같은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한 제도를 통하여 조사대상자를 선정하고, 대상자를 세무조사한 자료는 불성실 신고자의 행위를 분석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되고 있으며, 불성실 신고를 방지하는 정책을 진지하게 연구하여 이를 바탕으로 탄력적으로 제도를 운용하기 때문이다.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수많은 실증적 논문들이 미국에서 활발히 발표되는 것은 이러한 자료가 축적되어 활용되고 있는데 기인한다. 신고납부제도하에서지만 불성실신고자는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이 높고 불성실신고자로 밝혀지면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여야 한다. 불성실 신고로 인한 기대이익보다 기대손실이 훨씬 높게 제도가 정비되어 있으므로 성실신도로 유도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작업이 모두 전산을 바탕으로 이루어 지기 때문에 자의적인 요소가 철저히 배제될 수 있다.

부가가치세 조사는 성실한 납세를 조장하고 담보하는 중요한 방법이 된다. 97년 이후 조사를 받은 사업자는 0.3%를 넘지 않는다. 이는 부가가치세조사를 거의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리가 아니다. 부가가치세제의 발전뿐 아니라 소득세, 법인세등을 정상적으로 징수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의 조사가 심도있고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엄정한 조사와 고의적인

탈세에 대해서 무거운 가산세뿐 아니라 조세범으로 처벌되어야 한다. 그래서 탈세를 하면 사회적인 매장을 당하고 이후에는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없을 만큼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



제5장. 부가가치세 정착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 구축방안

제1절 조세교육 및 홍보의 확대

국민의 납세의식은 일순간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 정치와 사회, 정치적 요인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오랜시간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강점기간과 전쟁 그리고 비민주적인 정부에서 국민적 필요와 합의에 의하여 조세정책을 결정한 적이 없으며 강제적인 집행의 결과에 의하여 국민의 납세의식이 건전하게 형성될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 또한 국민의 주요 의무인 조세에 대한 홍보와 교육도 국방, 치안, 교육등에 비하여 대단히 열등한 결과 대다수의 국민은 국세와 지방세를 구분하지 못하고 그 사용용도가 다르다는 것을 알지못하며 심지어는 공공기관과 정부투자기관 공기업에서 운영하고 시행하는 사업의 구분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조세를 탈세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렇듯 납세의식은 일순간에 개선될 수 없는 것이기에 초등학교를 비롯한 청소년에게 납세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교과서에 적극적인 납세홍보를 하여 인격의 형성시기에 자연스러운 납세의식이 형성되도록 하려면 소비자 단체등 사회단체에 납세홍보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함으로써 자발적인 납세의식 개혁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또한 신문, 방송을 통한 적극적인 납세홍보를 통하여 국민이 부담한 조세의 사용용도와 납세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간접적인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1. 납세교육과 납세홍보의 중요성

납세자의 자발적인 납세준응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의 납세자에 대한 교육 및 홍보는 물론이고 미래의 납세자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납세교육을 통해 납세자의 납세의식 내지 납세도의식을 높이고 건전한 납세관을 함양하며 세금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고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납세자등과 과세당국과의 상호이해를 증진시킴과 동시에 서로의 신뢰관계를 돈독하게 함으로써 납세를 당연한 국민의 의무로 인식하게 됨으로써 성실신고를 유도할 수 있다.

2. 학생들에 대한 납세교육의 실시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납세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교육은 일회적·단발적이 아니라 장기적·지속적으로 꾸준히 계속하여야 한다. 특히 초등학교·중등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과서에 건전한 납세관 형성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수록하여 정규교과의 과정에서 세금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3. 일반국민에 대한 납세교육 및 홍보의 시행

1) 보도매체에 대한 교육자료의 제공

여론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신문·잡지·라디오 및 텔레비전 등의 보도매체에 통하여 납세의식의 고취·건전한 세금관의 형성 및 탈세의 범죄성에 관한 교육자료를 방영한다.

. 또한 유선텔레비전에 매일 일정한 시간대를 할애받아 세금에 관한 프로그

램을 마련하고 세금에 관한 교육 및 홍보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유용하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그때 그때의 관심사항인 법령 및 제도의 개정내용·특정세금의 내용등에 대하여 해설·논평 등과 같은 유익한 보도자료를 개발·제공하여 기사화 또는 방영하도록 유도한다. 그리고 중요한 세금의 신고기한과 납부기한·기타의 시책이나 주지사항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광고 및 홍보를 행하여야 한다.

2) 안내책자의 작성 및 배부

각종 세금제도에 관한 해설·개정세법의 주요내용·납세신고의 절차등에 관하여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는 쉬운 표현으로 안내책자를 제작·배부하는 것은 매우 유용하다. 이와 같은 안내책자는 세무서의 창구뿐만 아니라 고속버스·열차의 대합실이나 공중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 비치하여 누구든지 손쉽게 입수할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

3) 홍보용 비디오의 제작·배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납세교육·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납세교실 또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간담회 등에서 바른 납세관의 형성·세금제도에 관한 지식의 전달 등을 목적으로 비디오 등을 제작하고 이를 희망자에게 무상으로 대여할 필요가 있다.

4) 납세교육 및 홍보기관의 전문성 확보

납세교육 및 홍보를 기획·집행할 기관을 확대 개편함과 아울러 납세교육·광고·디자인 및 홍보전략 등의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특별채용·배치하여 교육 및 홍보기능을 대폭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납세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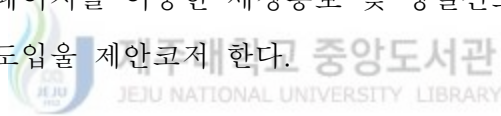
및 홍보는 납세자의 자발적인 납세순응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서 매우 생산적인 활동이다.

제2절. 국세청 마일리지제도(가칭) 도입

현재 국세청에서는 홈택스 서비스(HTS)를 시행, 부가가치세 전자신고가 활성화 되고 있다.

점차 수동에 의한 신고서 작성이 없어지고 전산에 의한 자진신고가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신고서 오류정정등으로 인한 행정력이 감소되고 전산상에 신고관련 서류가 내장되어 추후 민원발생여지 및 과학적인 자료관리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에 국세청 홈페이지를 이용한 세정홍보 및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방안으로 마일리지제를 도입을 제안코자 한다.



1. 신고마일리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원천징수 소득세 등을 신고기한내 자진신고하였을 경우 1건당 일정 마일리지 부여하고 이에 대한 혜택 부여를 함에 따라 자진신고유도하고 무신고자 축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 납부마일리지

각종 세금 신고후 납부기한내 납부할 경우 일정금액의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납부마일리지 포인트에 따라 납부세액에서 차감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납세자가 성실납부를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3. 성실신고 마일리지

각종 세금 신고시 전기대비 일정비율 증가신고자의 경우 성실신고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일정포인트 이상의 경우 국세청 모범납세자판단자료로 활용, 분납, 납기연장, 징수유예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4. 지식마일리지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종 세정홍보내용, 개정세법내용, 신고에 관한 안내말씀 등을 지식으로 저장하여 납세자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하고 이용도에 따라 지식 마일리지 점수 부여, 일정마일리지 이상의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정홍보비디오, 간편장부, 세정홍보책자등을 배부하는 등의 혜택 부여함으로써 자연스런 세금에 대한 홍보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위에서 제안한 마일리지제도는 모든 납세자들이 본인의 성실 신고, 납부, 세금에 대한 관심여부등에 따라 그 혜택을 직접 실감함에 따라 자연히 선진세정으로 진일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자연스럽게 납세에 관한 사회적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을 것이다.

제6장. 결 론

우리나라가 부가가치세를 도입하여 시행한지 27년이 지났다. 그동안 부가가치세는 재정수입의 안정적 확보에 크게 기여하여 2002년 부가가치세수입은 약 31조원으로 우리나라 총 국세수입의 30.4%, 간접세의 38.4%를 차지하며 단일세목으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요한 세목으로 자리를 잡았다.

또한 부가가치세는 선행세목으로서 부가가치세의 성실신고여부에 따라 소득세·법인세 기타 조세의 정확한 부담액이 결정된다는 측면에서 그 중요도가 높다 하겠다. 그러나 부가가치세에 대한 잘못된 인식 즉, 부가가치세가 소비자가 부담하고 사업자는 단지 이를 거래징수하여 납부하는 세목임에도 아직까지 사업자의 부담으로 인식하고 있고, 영세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위해 도입된 간이과세제도가 세액경감제도로 변질되어 부가가치세의 본질을 왜곡시키고 있다.

부가가치세가 전단계매입세액 공제방식으로 세금계산서의 정상적인 수수는 부가가치세 제도의 성과와 더불어 납세자간 공평과세실현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근대적이고 영세한 유통구조로 인하여 세금계산서의 정상적인 수수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무자료, 위장거래, 가공거래등 세금계산서의 부실거래가 계속됨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는 물론 소득세 및 법인세의 탈루가 만연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신용카드제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현실화할 수 있으나 수수료부담 및 조세부담증가로 신용카드 사용을 회피하고 있어 사업은 각종 신용카드 변칙거래, 신용카드 수취거부, 수수료 부담 전가, 봉사료 허위기재를 통한 과세표준 과소신고등의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부가가치세 제도가 자진신고제도로써 납세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야

함에도 성실납세를 유인할 수 있는 제도가 불충분하며 세무조사도 극히 일부분에 대해 이루어 짐으로서 그 효율성이 극대화 되지 못하였다.

부가가치세의 올바른 정착은 부가가치세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소득세 및 법인세와 연관되며 세금계산서제도, 신용카드제도와 간이과세제도, 납세자의 성실신고여부등 복합적인 요인들에 의해 그 성패가 좌우되며 결과적으로 국민의 납세의식 개선과 더불어 해결하여야 할 과제이기에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본래의 취지가 퇴색한 간이과세자는 궁극적으로 폐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실적으로 시행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점진적으로 과세표준의 현실화를 통한 간이과세인원을 축소하고 납부의무 면제조건을 강화하는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납부세액을 경감하여 줌으로서 사업자간 공평성 확보와 더불어 세금계산서 유통이 정상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세금계산서의 수수질서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있는 간이과세자의 매입세액 공제율을 확대하고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및 발행시기에 대한 해석과 집행은 전단계세액공제방식의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해석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원활하게 수취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의 추적조사의 지속적인 실시, 부실세금계산서 수수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세금계산서 정상적인 수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근거과세를 이룰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셋째, 신용카드 거래가 계속 비약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는 현 시기에 신용카드거래 및 사용에 대한 합리적 제도개선으로 신용카드사용을 정착시키고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현금영수증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용함으로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현실화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신용카드거래로 인한 신용카드사의 수수료 증가가 늘어나는 만큼 수수료를 인하하고 사업자에게는 소비자에게 전가하여 완전하지 않은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세액공제율을 인상하고 사용자에게도 지금보다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하여야 한다.

네째, 과세표준의 현실화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세무조사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으나 현재와 같이 총사업자의 0.3%정도만을 조사하고 있는 실정에서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두려워하여 과세표준을 현실화하는 것으로 의사결정하지 않고 있으며 세무조사에서 추정당하는 세금은 상대적으로 억울하다는 감정을 갖고 있다. 따라서 세무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는 조사대상자를 투명하게 선발하여야 하며 불성실 신고를 한 경우에는 반드시 조사를 받고 조사를 받을 경우의 불이익이 크다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는 성실납세자를 선정하여 납세자는 비록 조세부담을 더하여도 성실납세를 할 경우에는 세무조사의 염려없이 사업에 전념하고 과세당국은 불성실납세자중에서 조사대상자를 선별하여 세무조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다섯째, 부가가치세 정착을 위해서는 위와 같은 제도와 행정의 개선방안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조세교육과 홍보를 확대함으로써 납세의식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와 6.25, 비민주적인 정부를 거쳐오며 조세의 건전한 납부가 국민모두의 의무라고 인식하기 보다는 조세를 포탈하고 적게 내려는 것이 미덕으로 인식되어 온게 사실이다. 납세의식은 일순간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기에 청소년과 시민단체에 대한 납세교육 및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장기적인 납세의식 함양을 통하여 자율신고의 기틀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국세청 홈택스서비스를 이용한 국세청마일리지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성실신고 및 납부를 유도하고 세정홍보의 효과를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

다음은 본문에서 제기한 부가가치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간략히 요약한 표이다.

<표6-1> 요약 표

구분	문제점	개 선 방 안
제도 · 행정적 측면	1.간이과세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이과세 폐지 ○ 현행제도하의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세표준현실화로 간이과세인원 축소 - 납부의무면제요건 강화 - 매입세액 공제율 증대
	2.세금계산서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확대 ○ 필수적 기재사항에 대한 개선 ○ 사업자등록 교부 및 사후관리 강화 ○ 세금계산서 추적조사 지속적 실시 ○ 부실세금계산서 수수자에 대한 제재강화
	3. 신용카드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카드 사용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카드발행 세액공제의 현실화 - 신용카드영수증 복권제 확대 - 근로소득자 신용카드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 - 신용카드 변칙거래자 처벌강화 ○ 신용카드발행분 세금계산서 교부금지에 대한 개선 ○ 현금영수증 제도의 활성화
	4. 납세자에 대한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실납세자 우대 ○ 불성실납세자에 대한 처벌강화
사회적 인프라 측면	5. 납세환경과 납세자의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세교육 및 홍보의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에 대한 납세교육의 실시 - 일반국민들에 대한 교육자료의 제공 ○ 국세청 마일리지제도(가칭)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마일리지 - 납부마일리지 - 성실신고마일리지 - 지식마일리지

이상에서 부가가치세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은 제기된 문제의 충분한 해결책이 되기에는 미흡한 점이 없지 않지만 제도화된다면 납세자들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인지도 높아지고 성실신고로의 분위기가 확산되어 조세행정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1. 단행본

- 이만우, 「공공경제학」, 서울 : 법문사, 1989
- 이필우, 「재정학개론」, 법문사, 1989
- 장춘, 「기초과세자료 산출체계 확립방안」, 한국조세연구원, 1997
- 최광·이우택, 「부가가치세제의 정책과제와 개선방안」, 한국조세연구소, 1998
- 최명권, 「부가가치세법론」, 조세통람사, 1998
- 한장석·김용관, 「부가가치세2004」, (주)광고TNS, 2004
- 국세청, 「국세청 통계연보」, 2003
- 국세청, 「탈세 그 유형과 실태」, 1982



2. 논문

- 김동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현실화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
- 김완석, “납세환경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소, 2000
- 김현수, “부가가치세제상 간이과세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
- 박병목, “부가가치세제의 결함과 납세도의 의식이 세부담 공평성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
- 서희열,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제도와 회계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6.

- 안중화, “신용카드 사용활성화를 통한 과세표준 현실화 방안”, 전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
- 이원희, “우리나라 소규모 영세사업자를 위한 부가가치세 특례제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
- 정영래, “부가가치세제의 개선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조덕규,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의 현황 및 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세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
- 한상원,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현실화방안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4.



ABSTRACT

A Study On Improving the System And Administration and Establishing the Social Infrastructure to Settle the Value-Added Tax(VAT)

HEE-KYOUNG CHOI

Department Of Accounting
Graduate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Kyung-Joo Lee



Twenty-seven years has passed since value-added tax(VAT) was introduced in Korea. VAT was made great contribution to stable collection of the government tax revenue. In 2002, for example, the amount of VAT was 31 trillion won, accounting for 30.4% in national tax and 38.4% in indirect tax. The proportion of VAT is more than any other tax items. As a leading tax item, the importance of VAT is high because it determines tax burden of income tax or corporation tax

Although, VAT is very important and has much influence on people, it has not been settled in consciousness of Korean people. Still now, VAT is thought as business person's burden, simplified VAT system is considered as a method to evade taxes, and illegally giving and receiving tax invoice is widely done in all over the places.

A proper settlement in VAT is mainly influenced by the factors such as tax invoice system, credit card, simplified VAT system, and honest tax report practices.

More importantly, establishing extensive consensus on fair taxation is essential. The purpose of the thesis is to search these topics, and i suggest the following neasures to reform the VAT system.

Firstly, simplified taxation system should be in principle abrogated. However, much confusion would be expected, in executing the measure. Thus, the realization of tax base and the reduction of exemption from taxes should be required to achieve a fair taxation and straighten tax invoice circulation.

Secondly, the deduction rate of purchase tax liability which is the chief obstacle of tax invoice execution ought to be extended. In addition, the rules of mandatory entries and issue time in tax invoice have to be interpreted flexibly so that anyone can receive tax invoice easily. Also, the reinforcement of both tracking tax invoice and punishing the receiver of insincere tax invoice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order of tax invoice transfer.

Thirdly, the credit card should be taken root in korean society through the improvement of credit card transaction system. As a chance to realize VAT base, we should utilize the cash receipt system which is scheduled to take effect on and after january 1, 2005. We should also lower the credit card commission to an extend of increasing cost of compananies, elevate tax credits ratio to business persons in compensation for the burden of VAT, and bestow benefits to customers as they use credit card..

Fourthly, although tax audit is the effective method to compelling actualization of tax base, tax payers are not afraid to have tax audit which covers 0.3% of all business person and they feel unfair to be charged taxes. Consequently, the target of tax audit must be selected transparently in order to elevate tax audit efficiency. Also, they should get tax audit by all means whenever they file tax incorrectly. In this way, they should have the notion of incorrect tax filing and its disadvantages. On the other hand, we should give good treatment to sincere taxpayers who do not concern the tax problems but just work hard to get a living.

National tax service should make constant efforts to select insincere taxpayers as tax audit target.

Finally, it is important to inspire the taxpayers obligation by utilizing tax education and public relation. Since taxpayers' obligation is not formed in an instant, tax education and public relation are essential for long term cultivation of taxpayers responsibility which would result in fostering self-taxfiling practices. In addition, NTS mileage policy in HomeTax service might be utilized to be enforced to guide straightforward tax file and tax payment as well as tax education.

These neasures may not be sufficient to solve all the probrems associated with VAT and to improve VAT system, however, if it executed properly and systematically, tax administration is expected to settle in a desirable way together with eradicating the injustice in tax file .

